

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1차 정례회 도시·교통위원회
【2019. 6. 17.(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도 시 · 교 통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6월 17일
전문위원 이 광 희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19 - 28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 출 일: 2019년 6월 3일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6월 11일

2. 제안이유

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도입·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보험가입 내용(안 제3조 ~ 제6조)
 -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강서구민
 -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
 - 보험료는 구에서 보험 기관에 직접 납입
 -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험 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
- 다. 보험금의 지급 청구, 지급 기준, 보상 제외 등 보험 운영(안 제7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9. 3. 20. ~ 2019. 4. 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취지

이 조례안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이 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였음.

1) 안 제1조~제2조: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.

-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한파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- 사회재난: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

2) 안 제3조~제6조: 보험 내용에 대해 규정.

- 가입대상은 강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
-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범위와 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
- 보험료는 구에서 보험 기관에 직접 납입
-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험 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

3) 안 제7조~제10조: 보험 운영에 대해 규정.

-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보험 기관에 보험금 직접 청구
- 보험기관은 피보험자에게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 지급
- 법령, 보험 약관 등에서 제외되는 보상 내용을 명시

다. 종합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같은 법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 제3조 등을 참고하여 각종 재난·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제출됨.
- 비용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(약 60만명)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, 1인당 보험료를 400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다만, 보험 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,
-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"국가기반체계"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

제3조(구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재난 발생 후에는 강서구민(이하 "구민"이라 한다)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, 조언,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.
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,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